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2년 6월 일
발 의 자 : 이성재 의원 외 3인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상권을 최대 위협하는 농협하나로마트 등도 포함시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 시키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강화

○ 유통산업발전법을 피해가기 위해 SSM외에 30~50평 규모로 24시간 영업하는 복합점포 '편의형 슈퍼마켓' 제재

3. 건의내용 : 별첨

4. 제출처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성주군수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물론 건강한 삶과 행복 추구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특히, 서민생활의 대표적인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하여 관내 2개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전통시장날인 매월 2일과 17일 이틀간 휴무를 하게 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군과 같은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의 실상을 파악해 보면 지역의 중심인 읍(邑) 지역에 1만 3천명, 여타 면(面) 지역은 2천명에서 6천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3월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로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본래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건의 드리게 됨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군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대규모나 준대규모점포보다 현실적으로 더욱 지역 상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막대한자본과 전국적 유통망, 농협자생단체(ex영농회, 부녀회, 대의원, 주부대학 등)을 가진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라고 생각됩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수·축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창구로 활용,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본연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할인점 또는 SSM과 비슷한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취급품목 또한 생활용품은 물론 가공식품, 신선식품, 심지어 농기구, 농약 등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없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유통관련법에서 배제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군 면 지역의 상가를 예를 들면 수십 년간 가족의 생활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 왔던 소규모점포(ex식육점, 슈퍼마켓, 농약 등)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취급하는 품목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소규모점포는 폐점과 동시에 가족의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의 농어촌 읍면 소재지에 주인 잃은 상가만 흉물스럽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성주군의회에서는 중·소·농어촌 지역의 상생발전에 저해가 되는 이러한 병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골목상권 종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드리고자 **우리 군의회 의원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농협하나로마트가 그 설립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중·소·농어촌 지역에서는 골목상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농협하나로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지역상권의 안정과 중소상인들의 시름을 들어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있어서 모든 항목이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인구와 재정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됨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기업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피해가기 위해 SSM외 소규모인 30~50평 규모의 매장을 설립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24시간 판매하는 복합점포 '편의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창고형 대형할인점-대형마트-SSM-24시간 편의형 슈퍼마켓'으로 이어지는 융단폭격을 이겨내기 위해 자구노력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와 중소상인, 지역의 민·관과 사회단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군의회의 건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2년 6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